

○ 의안제출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

- 개정 이유
  - 고용직의 기능직전환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기 위하여 전문을 개정코자 한것임.
- 주요 내용
  - 고용직의 기능직 전환으로 직명이 폐지됨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함.
  - 고용직중 기능직으로 미전환된자가 1992. 5. 10까지 연장근무 할 수 있도록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환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안 부칙)
- 개정조례안 ( 9 면에 실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지방고용직 공무원(이하 “고용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임용권자) ①고용직공무원은 구청장이 임용한다.

②제1항의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전책을 말한다.

제3조(신규임용) ①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은 별표의 직명에 의한다.

②고용직공무원을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미리 업무수행능력 기타 적격성을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방법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은 14세이상 20세까지로 한다.

④고용직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한사항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에 준용한다.

제4조(전보임용) 고용직공무원은 동일직명에 한하여 전보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임용은 전출입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에 전보임용원칙 전보의 제한 및 전출입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방법원의 파견) 임용권자는 소속 고용직공무원중 방법원을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근무상환연령) ①고용직공무원의 직명별 근무상환연령은 별표와 같다.

②고용직공원은 그 근무상환연령에 달한날이 1월과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과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 된다.

제7조(당연퇴직) 고용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 된다.

제8조(면직)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 시켜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제9조(휴직)**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즉결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병역복무휴직자의 결원보충)** ①고용직공무원이 제9조 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 부터 당해휴직기간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 보건소및 동사무소 단위로 하나의 정원관리기관(이하 "휴직자정원관리단위"라 한다)으로 하여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가하고 기관별정원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조정 임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후 휴직자 정원관리 단위기관의 고용직공무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것으로 보며, 제2항의 임용권자는 기관간의 현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 ①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기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한다.

②고용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중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직명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으로서 직명이 폐지된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명이 있는것으로 본다.
- ③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의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1992. 5. 10까지 연장근무하게 할 수 있다.

**<별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 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

1종	2종	경 노 무	근무상한연령
방법원			53세
		사 환	

**비고 :** 방법원은 이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

○ 청원제출

1. 양평1동 포푸라 연립주택 재건축에 관한 청원

(1991. 10. 10 양평동 2가 40-1 이상환외 203인으로부터 윤태봉의원의 소개로 제출)

· 요 지

양평동2가 40-1에 소재한 포푸라 연립주택은 영등포구의 상습침수지역인 안양천변에 위치하고 84, 87년 장마때는 1층까지 물이차는 침수로 단지 곳곳에 누출되기도 하며 지하에는 하수, 정화조의 누수로 악취가 나며 침수, 감전위험, 통신불량, 수도, 추위등을 감수하며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아오면서, 공인진단 기관인 대한건축사 협회의 40여일간 4개조 8명의 기술팀에 의한 정밀진단결과 개축 또는 재건축을 요한다는 진단결과에 따라 91. 8. 8 구청에 재건축인가 신청을 하였던바, 관계규정에 의거 노후불량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판정 반려했기에 구민의 주거생활 안전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건축 청원을 제출케 됨.

○ 서면질의

1. '90년, 91년도 건축허가 및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현황에 관한 질의

(1991. 10. 이종식의원 질의 1991. 10. 17 영등포구청에 송부함).